##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5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송기헌・박균택・박정하

박주민 • 백승아 • 손명수

윤건영 • 이병진 • 정준호

정춘생 · 정태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 발생지로부터 비슷한 거리이거나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곳임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보고 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 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 항 등).

#### 법률 제 호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조사하여야 한다"를 "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방법 및 기준"을 "방법·기준 및 결과보고서 공개"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ㆍ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대책지역을 지
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
시 등) ① (생 략)	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②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	
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	
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공
	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u>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u>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소음영
	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인터
	<u>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u>
	<u>한다.</u>
<u>④</u>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	<u>⑤</u>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음영향도 조사의 주기· <u>방법</u>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u>방법ㆍ기준 및 결과보고서 공</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게</u>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
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	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u>특별자치시장·시</u>	<u>시장·군</u>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u>수·구청장</u>
<u>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u>	
<u>수・구청장"이라 한다)</u> 은 소음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	
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	
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	<b></b>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